

## 제 1 장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은 대한신생아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Neonatal Medicine>에 연구 결과를 게재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가 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 과정에 관한 제반 윤리적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연구 및 출판의 진실성을 확립하고, 신생아학과 의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장 연구 윤리

제 1조 연구 윤리는 논문의 날조 및 변조와 표절에 관한 사항, 생명윤리와 동의서에 관한 사항, 자료의 분석과 표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제 2조 날조 및 변조 금지

연구자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연구 내용 혹은 결과를 조작하지 않는다.

### 제 3조 표절 금지

연구자는 타인의 개념, 결론, 설명, 가설 등의 아이디어, 연구 방법(과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반드시 어떤 형태이든 해당 사항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 제 4조 생명윤리와 동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세계의사회에서 정한 헬싱키 선언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학연구는 연구의 준비에서 종료 단계까지 그리고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윤리적인 고려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 작성은 해당 법률 및 규정,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 및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IRB)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물실험을 할 경우 연구자는 연구실에서의 동물실험과 관련된 국내, 국외의 실험지침을 따랐는지 명시해야 한다.

### 제 5조 자료의 분석과 표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에 의한 결론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과학적이며 윤리적인 연구를 한다.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함에 있어 반드시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대상의 확보, 자료의 누락이 없는 정확한 연구 자료의 수집, 오류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적절한 통계 분석법을 이용한 자료의 분석, 결과의 정확한 해석에 의한 타당한 결론 유출 과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논문 작성 시에는 논문의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연구자는 순수한 학문적 목적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도록 하며, 위에 제시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리 정해진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만들어 제시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 3 장 출판 윤리

제 1조 출판 윤리는 저자됨, 이해관계, 중복 출판, 심사와 편집 과정에서의 윤리 사항 등을 포함한다.

### 제 2조 저자됨

제 1항. 저자의 자격은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이다. 이는 1) 연구의 개념과 설계에 참여, 2) 데이터 수집과 해석 담당, 3) 발표 초안 작성에 참여, 4) 발표 최종본 승인 등에 관여함을 의미한다.

제 2항.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 참여해야 한다.

제 3항. 연구자의 표시에 있어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연구자의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 제 4항. 특수관계의 공동저자 연구 참여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자의 소속, 직위, 논문 기여도(구체적인 역할)를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공동저자 중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 원고 겹표지에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 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가.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의미한다.

나. 만약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다. 특수관계인 논문 투고시 (나) 항의 경우를 위해 저자들은 개인 정보 제공 사전동의서를 제출한다.

### 제 3조 이해관계

모든 연구는 논문의 출판과 관련하여 연구자 혹은 연구기관과 재정적 혹은 사적인 특별한 관련에 의한 이해관계로 인한 영향을 철저히 배제하여야 한다.

### 제 4조 중복 출판

제 1항. 연구자는 국내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자신의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거의 동일한 논문을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중복 게재하지 않으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하지 않는다.

제 2항.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 제 5조 심사와 편집 과정에서의 윤리

제 1항. 간행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 2항. 간행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적인 관계, 선입견 등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 3항. 투고된 논문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4항. 심사자는 심사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간행

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5항. 심사자는 평가의견서에 자신의 의견을 밝힐 때 보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 6항. 심사자는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 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가 발견된 경우는 해당 사항을 간행위원회에 알린다.

제 7항. 간행위원은 심사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 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한신생아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릴 적절한 대응을 한다.

제 8항. 심사자는 심사의뢰 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킨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9항. 간행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제 6조. 연구윤리위원회

제 1항.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하여 위반 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하여 해당 논문 및 연구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한다.

제 2항.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대한신생아학회 회장, 부회장, 총무위원장, 간행위원장, 법제위원장, 수련교육위원장, 자문 변호사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제 3항.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위원 과반수로 처리하되, 해당 연구자에게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제 4항.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 5항.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대한신생아학회에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심의 위촉내용, 부정행위의 내용, 위원의 명단과 의결 절차, 결정 사항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 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된다.

### 제 4장 연구와 출판 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 제 1조 위반자에 대한 처리

##### 제 1항 저자의 부정행위

(1) 연구자의 행위가 고의성 없이 단순히 출간윤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는 저자에게 윤리적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 윤리기준에 대하여 알려 주는 공식 서한을 발송한다.

(2) 저자의 행위가 저자의 다른 논문의 일부를 복사하였거나, 대한신생아학회가 요구하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경미한 경우라면 지적 서한과 함께 향후 재발 시 징벌이 뒤따르게 됨을 알려준다.

(3) 의도적인 날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결과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가. 편집인은 저자의 소속기관, 연구비 지원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통보를 요구한다. 이때 반드시 사실적 내용만을 기관장에게 서신으로 전달하며,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한다.

나. Neonatal Medicine 홈페이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다. 해당 연구자에게는 향후 3년 이내 Neonatal Medicine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제 2항. 원고 심의자의 부정행위

원고 심의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편집인은 대한신생아학회지에 원고 투고의 금지, 심의 및 기타 편집에 관한 업무에서의 축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 제 2조 위반 논문의 처리

제 1항. 논문이 날조, 변조, 혹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결과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위에 열거한 윤리 기준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Neonatal Medicine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논문을 취소한다.

제 2항. Neonatal Medicine에 해당 논문의 중복 출판, 표절에 대한 연구윤리위반 행위에 대한 공지의를 글을 발표한다.

제 3항. Neonatal Medicine에 부정행위 전모에 관한 편집인의 글을 발표한다.

#### 제 3조 연구 윤리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제 1항. 간행위원회는 Neonatal Medicine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 2항. Neonatal Medicine이 지향하고 있는 연구 윤리지침을 투고 규정에 삽입하고 연구자로 하여금 투고규정을 상세하게 읽도록 한다.

제 3항. 주기적으로 편집인의 글을 통하여 연구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심각성을 알려준다.

제 4항. 심사자들에게도 연구와 출판 윤리 위반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심사자로서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제 5항. 연구 윤리 위반 방지를 위하여 연구수행방법과 연구 윤리 및 출판윤리 원칙을 알리도록 한다.

제 6항. 모든 저자는 제출되기 전에 논문을 돌려보도록 하고, 원저임을 확인하고 개개인이 각각 확인하도록 한다.

제 7항. 논문은 한 번에 한 잡지에만 투고하도록 한다.

### 제 5장 (부칙)

1.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2.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한신생아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된다.
3. 개정된 규칙은 2021년 12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참고: 한국연구재단발행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2015),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발행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3판(2019),국제표준출판윤리(2021) 및 국제의학학술편집위원회 권고지침(2021)을 따른다.